

윤리강령

소관부서 : 법규준수팀

제정 2016.12.30.

개정 2017.11.1.

개정 2021.3.24.

개정 2021.4.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강령은 미래에셋증권(이하 “회사”라 함)의 윤리경영 실천 및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관련법령, 규칙 및 규범을 준수하고, 금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투자자를 보호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2조(고객 우선)

- ①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신념으로 고객에게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이 고객임을 인식한다.
- ②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고객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기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는다.

제3조(고객 보호)

- ① 회사는 고객의 재산과 안전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도 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3장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윤리

제4조(주주 가치 극대화)

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와 투자자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5조(주주 권익 보호)

회사는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정보제공)

회사는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7조(공정한 대우)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지연·혈연·학연·성별·종교·연령·장애·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하게 평가한 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 한다.

제8조(삶의 질 향상)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복지 정책과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9조(윤리문화 정착)

회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 한다.

제5장 임직원의 근무 윤리

제10조(신의성실)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11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한다.

제12조(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 금지)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3조(자금세탁방지)

임직원은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임직원 자신이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다.

제14조(이해상충행위 금지)

임직원은 고객이나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해관계의 상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준법 담당부서 및 부서장(팀장)에게 관련된 모든 사실을 밝힌다.

제15조(부정부패)

- ① 임직원은 뇌물과 부패가 회사의 윤리적인 명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느 누구로부터도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하지 않는다.
- ③ 임직원은 회사 자산이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지도 않는다.

제16조(정보보호)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업무정보와 고객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관리한다.

제17조(자기혁신)

임직원은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기혁신에 힘쓴다.

제6장 경쟁사 및 협력사에 대한 윤리

제18조(자유경쟁)

회사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경쟁사와 정정당당하게 경쟁한다.

제19조(공정거래)

- ①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나 특정업체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하지않고, 청렴한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한다.
- ②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공정 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반독점 및 반경쟁 관행을 금지한다.

제7장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윤리

제20조(사회적 책임)

- ① 회사는 책임 있는 경영과 고용의 창출, 성실한 조세 납부를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
- ② 회사는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교육 및 기부·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여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제21조(국내외 법규 준수)

회사는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22조(재해예방)

회사는 안전에 관한 모든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고객, 업무위탁 제휴업체, 하도급 업체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위험요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23조(환경보호)

- ① 회사는 정책 기준과 절차 수립 시 환경보호를 주요한 요소로 감안하고 친환경적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② 회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재해·위험의 예방관리 및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24조(정치관여 금지)

회사는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지원하는 행동으로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제8장 보칙

제25조(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